

한국 FTA의 TBT 규범 비교분석에 따른 법적 쟁점 연구*

김민장**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정준***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비관세장벽의 확산과 함께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과 관련한 통상마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들의 법적, 제도적 대응도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하여 발전하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FTA 상 TBT 관련 제도의 경우, WTO의 TBT 협정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작하나 한국이 기체결한 15건의 FTA는 쟁점별로 WTO 협정보다 발전된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분야별 접근과 후속조치, 국경조치와 시장감시 및 표시·라벨링 부분에서 그러하다. FTA 협정상 분쟁해결제도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기존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포럼쇼핑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바 큰 차이가 없으나, 한-EU FTA의 경우는 한국의 FTA 협정들 중에서 유일하게 엄격한 중개메커니즘을 도입한 바 있다.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경우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참여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정상 TBT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 협정상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단, TPP 협정상 TBT 관련 분야별 부속서는 기존 한국의 FTA상 TBT 제도보다 분야 면에서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고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주제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FTA 분쟁해결, 무역기술장벽(TBT), TBT 분야별 접근

* 본 연구에 훌륭한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통상법연구회 연구원들과 아시아연구소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센터(Center for Asia-Global Economic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연구원들께 감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Social Science Korea(SSK, NRF-2014S1A3A2043505)의 지원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2014-00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주저자

*** 공동저자

1. 서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들은 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 한 해에 동안 WTO에 통보된 기술규정만 하더라도 2,200건이 넘으며 TBT 위원회에 제기된 무역현안 이슈도 85건에 달한다. 무역기술장벽 문제가 제기된 분야는 식음료, 가전, 정보통신 기기,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유아동 완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규제 형태를 고려해도 성분 규제, 마케팅 규제, 적합성평가절차, 라벨·표시 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기초로 한다.

이처럼,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들은 WTO TBT 협정 운용을 촉진하고 규범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WTO TBT 위원회는 TBT 협정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다자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회원국들의 협정 운용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되는 3차년 보고회의를 통해 모범규제관행을 공유하고 규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표준 활용 강화와 표준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 개최된 7차 보고회의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관해 계속 작업하고 논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은 최근 FTA, 메가-FTA 등 지역·양자무역 협정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점차 많은 FTA 제도가 TBT 조항을 두고 양자 무역에서의 TBT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WTO TBT 규범과 절차 적용을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이후부터는 모든 FTA가 TBT 조항을 삽입하여 기본 규범과 절차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일부 협정들은 WTO 규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법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 도입된

TBT 제도는 WTO TBT 협정상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정의를 기본으로 따르며 투명성 절차를 강화하여 RTA 회원국들 간의 정보 공개, 정보 공유 및 의사 개선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WTO 기본 규범 확인 및 투명성 절차의 양자관계에 대한 적용은 상당수의 RTA에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수의 RTA에서만 도입되고 있으나 TBT 제도 발전에 의미가 있는 변화는, 기술규정의 조화 및 동등성 인정에 관한 의무, 적합성평가 결과의 수용 및 상호인정에 관한 의무, 그리고 분쟁해결 절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무차원에서 국가들이 무역장벽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후속 교섭을 강조하고, 기술규제 협력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하며, TBT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非)사법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TBT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접근 방법으로 주목된다.

RTA에 도입되고 있는 TBT 관련 규범과 절차가 통상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성법적 성격이 강하여 이행강제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지역무역 체제에서의 TBT 규범 발전은 전반적으로 다자규범에 수렴하면서도 TBT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법을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주요 무역 국가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으며 2015년 12월 현재 14개의 FTA를 발효시켜 글로벌 시장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에는 TBT 관련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WTO 수준의 TBT 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범과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FTA 당사국 간의 투명성 절차를 강화하고, 분야별 접근을 도입하거나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등, FTA상 새로운 TBT 제도 모델을 도입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지난 15여 년간 거대경제권을 포함,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인 FTA 협상을 전개하면서 선진적인 TBT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FTA의 TBT 규범에 관하여 한국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은

학술적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FTA를 통해 도입한 TBT 제도들에 대해 비교연구 한다. 한국이 2015년 현재까지 체결한 15건의 FTA 협정문을 대상으로 주요 TBT 규범과 법적 쟁점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 종합적인 특징과 발전한 양상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2절에서 전반적인 FTA TBT 규범에 관한 기존연구를 조사, 검토하고, 제3절에서 한국 FTA에 도입된 TBT 제도의 주요 규범상의 특징과 쟁점사항을 연구하며, 제4절에서 최근 타결된 TPP 협정상의 TBT 규범과 비교분석한 후, 끝으로 제5절에서 FTA 규범 이행을 통한 한국의 TBT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II. 기존 연구 조사 및 연구 방법

1. 지역무역 협정의 TBT 규범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FTA 등 RTA 체결이 확산되고 지역무역 협상을 통한 TBT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지역 체제에서 발전하고 있는 TBT 규범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특정 국가의 RTA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Kotschwar(2001)의 미국이 체결한 15개 RTA의 TBT 제도를 분석한 논문 등이 있다. 전 세계의 RTA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유럽 등 전 지역에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관세통합, 특혜협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다수의 RTA를 대상으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조항을 연구하고 WTO 규범과 비교 분석하며 쟁점별로 일반화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도출해 내고 있다.

가령, Lesser(2007)는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양자, 지역무역 규범의 발전이 다자무역 규범과 수렴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82개 협정

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24개 협정을 선별하여 구체적인 TBT 조항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 협정에서 주요하게 도입되고 있는 TBT 조항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 바, WTO TBT 협정에 대해 언급한 조항, 기술규정·표준·적합성평가절차의 조화 규정,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락,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투명성, 분쟁해결, 기술지원 등의 협력강화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협정들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무역기술장벽 자유화를 추구하는 이유를 (1) RTA 회원국의 개발 수준, (2) RTA가 추구하는 통합 수준, (3) RTA에 EU 또는 미국의 참여 여부에 의한 결정요인으로 설명하였다.

Lee(2012)는 EU, 미국, 호주, 싱가포르가 체결한 RTA 50개를 대상으로 TBT 제도 연구를 진행하였고 앞서 Lesser(2007)가 제시한 7가지 주요 규범을 기본 분석틀로 적용하여 각 규범별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동 연구는 FTA의 TBT 규범이 WTO 규범과 보완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 다자규범에 보완 및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Molina and Khoroshavina(2015)는 기존 연구들보다 훨씬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RTA의 TBT 규범을 연구하였는데, WTO 협정 발효 이전부터 최근까지 총 238개 RTA를 대상으로 TBT 규범을 조사하고 Lesser(2007)가 제시한 기본 규범과 Lee(2012)가 검토한 상세한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각 규범의 TBT 모델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71개(72%)의 협정이 TBT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고, WTO TBT 협정 이행을 언급하거나 투명성 의무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WTO 설립 이전의 RTA에는 TBT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WTO 설립 이후부터 TBT 조항이 삽입되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모든 협정에서 구조적(systemic)으로 TBT 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협정들은 WTO 규범 수준보다 강화된 규범과 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TA에서 TBT 규범을 포함시키지 않는 사례는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 체결된 인도,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들의 RTA로 나타난다.

2. 논문의 연구 방법

이처럼 기존 연구들을 고려할 때, RTA에서 주요하게 도입하고 있는 TBT 규범은 기술규정의 조화와 동등성 규범,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일방적 인정 또는 상호 인정, 투명성 절차, 분쟁해결 제도, 표시와 라벨링 제도, 특정 분야 조항으로 요약된다. 또한 사례 분석 대상으로는 미국, EU, 호주, 싱가포르, 칠레, 모로코의 RTA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과 EU,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에 관한 연구가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기본 규범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 협정에 주요하게 도입되고 있는 TBT 규범을 연구하였다. 특히 한국 FTA의 TBT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한 규범인 기술규정 관련 조항, 적합성평가 관련 조항, 분야별 접근 조항,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조항 그리고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WTO 협정, 한국의 FTA 협정들, 그리고 기존논문에서 분석된 전반적인 FTA 특징과 비교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기체결 FTA”란, 2015년 12월 현재 발효된 14개 협정과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콜롬비아 협정을 포함한다. 기존에 발효되었던 14개의 협정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협정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은 국문 FTA 협정문을 기초로 진행되었으며, 각 FTA의 규범과 절차상의 차이에 관해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각 협정 내 규범 간의 유기적 구조, 각 협정 목적상의 법적 해석과 쟁점, 조항의 적용과 그 법적 결과에 관한 논의는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FTA 대부분이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 적합성평가 결과 인정, 적합성평가 기관의 지정, 등록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후속협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후속협상과 후속(부속)협정에 관한 논의도 연구범위의 제약상 제외하며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III. 주요 쟁점에 관한 FTA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의 기체결 FTA에 도입된 주요 TBT 규범을, 관련 WTO TBT 협정 규범과 비교 분석하고 여타 한국 FTA의 관련 규범들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는 FTA TBT 제도의 기본 사항으로, (1) WTO TBT 협정과의 관계를 언급한 조항과 (2) FTA상 TBT 조항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FTA의 주요 TBT 규범으로 (1)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용 조항, (2) 적합성평가 인정 조항, (3) 분야별 접근 조항, (4)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조항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끝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 기체결 FTA가 도입하고 있는 분쟁해결 제도를 연구하며 특히 한-EU FTA의 중개메커니즘을 분석한다.

1. FTA TBT 제도의 기본 사항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는 TBT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WTO TBT 협정 이행을 확대하고 기술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FTA TBT 제도의 기본사항으로 WTO TBT 협정과의 관계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의한다.

1) FTA TBT 제도의 목적 및 WTO TBT 협정과의 관계

한국 FTA TBT 제도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상의 TBT 규범 이행을 강화하여 무역 증진과 원활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FTA는 각 당사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일부 FTA에서는 다지규범에서 다루지 않는 목표를 추가적으로 제

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협정은 “사업기회 증대 및 사업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면서 국내 경제주체의 이익을 협정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명시하거나, 한-뉴질랜드 협정의 경우 “TBT 협정의 이행 증진과 표준 및 적합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의 작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의 증대 및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협력 강화를 반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FTA TBT 제도는 WTO TBT 협정의 목적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후자를 통합하여 일부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의 모든 FTA가 당사국 서로에 대한 WTO TBT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 또는 재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을 가하여” WTO TBT 협정을 FTA에 통합하고 일부로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FTA TBT 제도는 WTO TBT 협정상의 기본 원칙과 의무를 그대로 도입하고 WTO 규범 이행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 목적 하에, 양자간 TBT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목적과 규범의 틀 내에서 FTA TBT 제도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적용과 관련하여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야기할 목적을 금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러 한국 FTA TBT 제도가 WTO TBT 협정과 마찬가지로 국제표준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중이거나 완성이 임박한 관련 국제표준을 자국 조치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기본적인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FTA 협정문이 이에 관한 명문조항을 두고 있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한국 협정들이 WTO에 대한 통보와 동시에 FTA 회원국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WTO 규범 수준보다 상세한 통보, 공개 절차를 두고 있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규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TO TBT 협정상의 통보의무를 기본제도로 도입하지만 FTA 제도에서는 비교적 구체

적인 절차를 추가하고 있다. 가령, 한-미 협정, 한-페루 협정, 한-터키 협정, 한-호주 협정은 신규 및 개정 기술규정을 WTO에 통보하는 동시에 FTA 회원국에게도 이중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가 하면, 통보 내용으로 필수적인 통보 내용과 국제표준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초안을 통보하였을 때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FTA가 많으며 대부분이 TBT위원회 권고사항과 마찬가지로 60일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에서 명확하게 의견개진 시한을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FTA 당사국 간에는 TBT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FTA TBT 규범은 WTO TBT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규범으로 적용하면서 당사국 간에 적용될 규범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며, 다자규범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구체적인 요건이 FTA 당사국 간에만 적용되고 제3국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체제가 다자체제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2) FTA TBT 제도의 적용범위

한국 FTA TBT 제도의 적용범위는 WTO TBT 협정 범위와 매우 유사하다. FTA TBT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적용된다. 또한 TBT 협정과 마찬가지로 위생 및 식물위생(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와 정부조달에 사용되는 제품규격은 범위에서 배제된다. 명문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WTO TBT 협정을 통하고 일부로 도입하고 있거나 일부 FTA는 WTO TBT 협정의 정의를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결국 TBT 협정과 동일한 범위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FTA는 적용범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기술규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또는 “표준관련 조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WTO TBT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혼동이 있

을 수 있으나 사실상은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기체결 FTA의 적용범위에 있어 WTO TBT 협정과 주요하게 다른 사항은 TBT 협정에 없는 문구가 FTA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싱가포르 협정의 적용범위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및/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공정의 평가”까지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정부 기관인 제조업자가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에 관한 적합성평가 사항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TBT 협정과 는 대별된다.

둘째, 일부 FTA는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그리고 한-뉴질랜드 FTA가 이에 해당된다. WTO TBT 협정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다루므로, FTA 협정문상 상기 문구는 “상품무역”과 관련 있는 국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를 대상조치로 삼는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에서 더 나아가, 무역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와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 FTA 당사국 간에는 간접적인 무역 제한 조치까지도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잠재적인 기술장벽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TBT 협정상 모호한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 문구가 얼마나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셋째, FTA상 용어와 정의가 TBT 협정보다 구체화 된 규정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TBT 협정상의 개념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주목된다. 대부분의 FTA들은 TBT 협정상의 개념과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협정들은 TBT 협정상의 의미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목록을 추가하거나 TBT 협정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들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 협정의 경우, 제9.1조(정의)에

서 “국제표준화기구”에 관하여 최소한으로 포함되는 국제표준화기구를 열거 하면서 예시목록을 제시하는 한편, “인증절차”, “표준관련조치”, “양립가능하게 한다”에 관한 별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용어들이 TBT 협정과 합치하는 것인지를 향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 협정 제9.10조와 한-캐나다 협정 제6.9조는 “우수규제관행”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 TBT 협정은 동 용어에 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FTA 정의를 통하여 구체화된 개념이 TBT 협정 목적과 합치하는 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FTA는 “표준관련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TBT 협정상의 “표준”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무역기술장벽”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의 예로는, 한-칠레 협정과 한-캐나다 협정이 있으며, “표준관련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동 문구의 개념이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를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전자의 “표준”이 무역기술장벽 조치 전체를, 후자의 “표준”이 WTO TBT 협정상의 표준을 가리켜 용어 사용이 혼용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한-싱가포르 협정은 “적합성평가”를 “의무적인 이행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관련 표준 및/또는 명세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정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로 정의하고 있어 동 FTA 협정문상의 “표준”이라는 용어가 의무적인 요건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WTO TBT 협정상의 “표준”과는 다른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어, 두 의미 사이의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FTA 목적을 위해 구체화되거나 새롭게 제시된 용어 및 개념이 WTO TBT 협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FTA 협정문에 사용되는 용어는 FTA 목적상 해석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FTA의 TBT 제도가 WTO TBT 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WTO TBT 협정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FTA 협정문상의 용어 해석 문제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통한 적용범위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두 협정 간의 용어 및 개념상의 불일치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많은 FTA들이 중앙정부,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대해 각각 뚜렷이 구분되는 조항을 두지 않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부 FTA는 중앙정부기관의 이행은 물론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이용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또한 한-미 협정과 같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중앙정부기관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 비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는 중앙정부기관 활동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협정들이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적인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FTA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술규제 및 표준제도에 관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수용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대한 법적 효력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볼 때 FTA의 적용주체 범위는, WTO TBT 협정과 마찬가지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국”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도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목적과 규범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방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의 간접적인 이행이 요구되거나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FTA TBT 제도의 주요 규범 분석

비교적 초창기에 체결된 FTA일수록, 그리고 개도국과 체결한 FTA일수록 WTO TBT 협정상의 의무와 권리를 확인 또는 재확인 하는 일반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한-칠레, 한-ASEAN 협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EU,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이 선진국과 체결한 FTA일수록, 그리고 한-중국, 한-콜롬비아 협정과 같이 최근에 체결된

협정일수록 TBT 규범이 구체화되고 발전된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락 및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 도입되고, 규제협력 및 기술협력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FTA 제도의 특징이며 분야별 접근이 점차 발전하여 TBT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싱가포르 FTA와 한-미 FTA에서 분야별 규범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한-EU FTA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도입된 것이 그 일례이다.

이하에서는 FTA에 도입된 적극적인 TBT 대응 전략이자 주요 규범으로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조항,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인정에 관한 조항, 분야별 접근 조항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조항에 관하여 비교연구하고 논의한다.

1)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의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술규정이라 하더라도 국가들마다 서로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이 기술장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WTO TBT 제도는, 가령 동 협정 제2.7조와 같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상대국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것을 장려하고 양국 간의 교섭을 통한 상호 수용 또는 일방적 수용을 약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규정에 의한 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국가의 기술규정에 자국의 기술규정을 일방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국가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국의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이 체결한 FTA들은 WTO의 상기 기본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 요건들을 도입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협정들이 상대국가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국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호주 및 뉴질랜드 FTA 그리고 최근의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와의 FTA는 상대국가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된 절차를 추가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한-뉴질랜드 협정의 경우,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한 약정 교섭에 대해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요건은 협정들마다 다르게 추가되어 있는데, “상대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FTA 유형, 수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한 FTA 유형, 그리고 상대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한 FTA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WTO 및 FTA 규범은 강행규범이 아니며, 일국의 규제권한은 법으로써 보장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는 기술규정 의무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규제 권한에 관한 국가의 기본 권리를 재확인하고 두 의무의 균형이 보장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가령, 한-싱가포르 협정 제8.8조는 양 당사국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며 각 당사국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는 “규제 권한의 보유”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각 당사국이 상대국가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다. 동 협정은 당사국간의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적합성평가절차 결과에 관한 상호인정이나 기술규정 등의 동등성 인정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고유한 규제권한을 보장하므로 WTO TBT 협정에 의해 기술규정의 양립성 확대를 촉진하고, FTA를 통해 추가적인 절차 규범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자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상대국가에게 일방적인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성 수용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는, 기술규정 양립에 관한 무

조건적 거부나 신의성실하지 않은 고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용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는, FTA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후속조치로 추가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협정들은 기술규정의 동등성 수용을 인정할 의무와 함께, 기술규정의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 교섭과 협정 체결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한-EU협정, 한-미 협정, 한-캐나다 협정들과 같이 선진국들과 체결한 FTA에는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후속협력을 권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Molina and Khotoshavina(2015)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상 당사국 간에 기술규정을 조화시킬 의무에 관한 조항은 전체 지역무역협정의 약 21%가 도입하였고, “약속(commit)”을 규정하는 제도, “가능한 경우 약속”을 규정하는 제도 그리고 조화를 “권장(are encouraged)”하는 제도로, 의무수준에 따라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지역무역협정 당사국 간에 기술규정의 동등성을 인정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전체의 17%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5% 정도가 선언적 조항에서 발전하여 WTO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무를 도입하고 기술장벽 제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TA의 전반적인 의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절반 이상의 한국 FTA들이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을 권장하고 있고, 한-EU 협정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의 동등성 인정 사례도 있어, 한국 FTA상의 기술규정 양립성에 관한 규범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에 관한 의무

한국 FTA는 적합성평가절차 적용 시 비차별 원칙과 필요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EU 협정, 한-중 협정과 같이 이를 명문조항으로 두고 있는 FTA가 있는데, 적합성평가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하고 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은 TBT 협정상의 의무, 특히 제5.1조상의 의무를 FTA 당사국 간에 적용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WTO의무 이행이자 FTA 협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절차상의 “인정(recognition)”은 크게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인정과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인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일방적 인정을 선언하거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인정은 다른 국가 영토에서 수행된 자국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자국에서 수행된 평가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인정은, 다른 국가 영토에 소재한 적합성평가기관을 일정한 기준 가령, 국제인정기준 등에 따라 자국 인가기관에 지정, 등록하여 자국 영토 내의 적합성평가기관이 갖는 업무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기체절 FTA는 적합성평가 결과와 기관에 대한 인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협정들이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일방적 또는 상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FTA 당사국들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하여 타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나) 적합성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다)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이 타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라) 타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인정, (마)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한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수용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기 메커니즘은 예시적인 방법들로 이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협정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정보 교환과 적절한 사용, 그리고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TBT위원회의 3차년보고회의를 통해 채택된 이행 메커니즘의 실행 강화와 확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TBT 접근 방법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상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실행될 수 있는지가 제도적 유효성 측면에도 보다 중요할 것이다.

(1)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우선, 한국 FTA들은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와 여러 개도국들과의 FTA 협정문은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에서 수행되는 절차와 동등한 정도로 만족스러운 보장을 제공하면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상대국가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와 같은 문구에 의해 이행강제성이 다소 경감되기는 하나 명문조항을 통한 기본 의무 중 하나로써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의무에 더하여, 한-미, 한-호주, 한-베트남 협정에서는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도입하거나, 상대국가의 적합성평가가 자국 영역의 기관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지 말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상호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FTA가 다수 있는데, 이는 WTO TBT 협정 제6.3조상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FTA들이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상대국가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협정과 같이 후속 체결을 위한 협상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상대국가가 요청하는 경우 되도록 협상개시를 고려하고 상호인정을 유효화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한국 FTA는 WTO의 상호인정에 관한 일반의무보다 구체화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인 권한이 보장되며, 적합성평가 결과 인정여부를 국가의 자율 의사에 맡기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 및 등록

WTO 협정 제6.4조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 위치한 적합성평가 기관이 자국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비차별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장려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 기체결 FTA 대부분은 WTO의 일반규범과 동일하게 적합성평가 기관들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승인, 인정, 지정, 면허 부여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협정은 상대국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 수행 권한을 자국 기관에 부여하기 위한 지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일부 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 역시, 당사국이 상대국의 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 원칙에 입각하여 인가, 승인, 인정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FTA 규범상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WTO 협정상의 “장려한다”라는 문구와는 대조적으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WTO협정에서보다 이행 의무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한-미, 한-뉴질랜드 및 호주, 한-칠레, 페루, 콜롬비아 FTA가 있다.

또한, 한-베트남 협정은 당사국 영역에 소재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가, 승인, 인정 등을 고려할 때 상대국이 서면으로 추천하는 기관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국가의 인가제도에 상대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한-미 협정과 일부 남미 국가들과의 협정은, 상대국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거부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가제도 운영 시 상대국 요청에 대해 우선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임을 알 수 있다. 추

가적으로 한-미 협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양측의 인가제도의 객관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가 기준을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적합성평가 기관들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해당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의 적합성평가 기관을 자국 기관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관의 시험·평가 역량, 경험, 관리·행정 능력, 절차적 관행 등 제반의 역량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상기 WTO 및 FTA 규범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인가(accreditation)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적합성평가 기관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인가기준에 대한 국제 및 지역 표준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어, 이러한 표준을 기초로 외국의 기관을 자국 기관과 동일하게 지정 및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EU 협정은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및 국제인가포럼(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IAF)과 같은 국제협회의 인가기준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EU 협정과 한-터키 협정은 국제인정 제도에 참여하고, 국제인정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인정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정에 관한 국제협정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인가제도 즉, 적합성평가 기관을 (상호)인정하기 위한 제도상의 기준을 국제표준과 조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FTA 규범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칠레,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협정과 같이 한국이 개도국과 체결한 FTA의 경우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협정 당사국 간의 협의채널을 이용하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TBT 위원회 설치와 작업반 활동을 통해 협정 체결 후에도 후속적으로 인정제도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도록 할 뿐이다.

요컨대, 적합성평가에 대한 일방적 또는 상호 인정 의무는 상대국 및 상대

국 기관의 제반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해 보면 한국의 FTA도 상대 국가에 따라 다른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선진국과의 FTA에는, 개도국과의 FTA와 비교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고려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과의 FTA는 분야별 접근을 통해, 양국의 상호인정에 관한 의무와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논의한다.

3) 분야별 접근과 후속조치

한국 FTA TBT 제도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분야별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FTA회원국 간에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을 높은 수준으로 제거하고 긴밀한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협정들이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교섭을 통해 기술규정 및 표준의 동등성 수용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BT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접근은 최근 도입된 FTA의 새로운 모델이며 Molina and Khotoshavina(2015)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지역무역 협정들을 중심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개(12%)의 협정이 분야별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 9개 협정, 일본 4개 협정, 한국 5개 협정, 중국 2개 협정, 대만 2개 협정 외에 EU, 미국, 칠레, 멕시코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FTA 협상 결과 특정 분야별 부속서를 도입한 주요 협정은 한-싱가포르 협정, 한-EU 협정, 한-미 협정, 그리고 한-캐나다 협정이며, 이하에서는 분야별 접근을 분석하였다.

(1) 전기, 전자 및 통신기기 분야

전기, 전자 분야는 일반적으로 상호인정 및 기술규제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며 Molina and Khotoshavina(2015)에 따르면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의 FTA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고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해서 APEC상호인정협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FTA도 주요 선진국들과 체결한 FTA에서 동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가 도입되고 있어 특별히 주목된다.

우선, 한-싱가포르 협정, 한-미 협정, 한-캐나다 협정은 전기통신기기 분야에 대해 APEC TEL(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상호인정약정의 1단계 또는 2단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베트남 협정은 동 APEC 약정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APEC 약정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베트남이 동 약정을 도입하고 지역 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EU협정은 전기 및 전자 장비 분야에서 당사국 간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싱가포르 FTA와 한-EU FTA는 상호인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부속서로 추가하였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양국은 협정 체결 후 2년간의 협의 끝에 2007년 10월 전기 및 전자장비 분야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8B에 합의하고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수용 의무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동 부속서는 각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의 적합성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이러한 지정 기관에 의해 제반의 적합성평가(공장/제품 사후관리 활동 및 시험결과, 인증업무 포함)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 하에 상대국이 지정하고 자국이 등록한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는 동 부속서를 통해 전기·전자장비 분야에 한해서 상대국의 인가제도를 기본적으로 신뢰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평가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EU 협정은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학물질 분야에 대해 별도의 분야별 접근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 접근 확보를 위해 상호 이행할 제도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자제품에 관한 부속서2-나는 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지며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한 합의사항은 첫째,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

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을 관련 국제표준 기관으로 확인하고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WTO의 기본의무를 재확인하라는 점, 둘째, 전자파적합성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의 적합성평가 절차에 있어 상호 공급자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을 수용할 의무를 채택하여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의 TBT 철폐에 합의하였다는 점, 셋째, 관련 강제인증 시행에 있어 제3자 시험을 포함시켰다는 점, 넷째, 적합성평가 절차 및 승인 검토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통상법적 관점에서 볼 때, WTO TBT 협정 규범과 비교하여 추가되거나 강화된 규범들로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두 규범의 차이에 따른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 협정 제6.1조는 관련 기술 규정 및 인증 요건 또는 절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 도입을 정당화하는 인간 건강 및 안전 보호와 관련된 *긴급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 (2)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 도입 이유가 제품의 성능에 관한 *실증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정보에 의해 지지될 것*, (3)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초래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할 것*, 그리고 (4) *당사자가 동 협정 발효 시에 그러한 요건이나 절차를 도입할 필요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항은 한-EU 협정이 WTO와 달리 리콜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 협정 제6.2조는 제품이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당사자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제품을 자신의 시장에서 회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는, *조치가 취해진 이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증된 설명과 함께*,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1) 적용 가능한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2) 표준 또는 기술규정을 부정확하게 적용한 것인지, 또는 (3) 표준 또는 기술규정 그 자체의 결함인지를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한-EU FTA에서 도입한 전자제품에 대한 분야별 TBT 규범은, 현행 기술규정의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해 공급자 선언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 무역비용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규정 및 인증 도입 시에는 FTA 체결 시 예견할 수 없었고 긴급한 이유와 기술·과학적 정보에 근거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당사국 간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무역 기술장벽을 최대 제거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리콜과 같이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객관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자동차 표준 및 기술규정 분야

Molina and Khotoshavina(2015)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에 도입된 자동차 분야의 TBT 대응 조항은 한-미 FTA와 한-EU FTA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미 FTA에 도입된 TBT 규범 수준보다 한-EU FTA의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미 협정 제9조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ECE)의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및 자동차 환경성능과 안전에 관한 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9-나에서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여, 제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협력을 증대하며, 다자간 포럼 참여와 자동차 관련 우수규제관행 개발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환경규제 적용에 있어 한국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후속 양해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배출기준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구분 기준을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의하여 적용되는 배출차량기준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 기준을 한국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EU 협정은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부속서 2-다를 도입하고 전자제품에 관한 부속서와 동일한 이유와 목적 하에 10개의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동 협정의 분야별 접근 규범에 있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제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 관련 규범이다. 동 협정 부속서는 국제표준과의 조화 규범과 관

련하여 한-미 협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분야의 자동차규제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WP. 29)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WP.29가 국제표준제정기관임을 인정하며 동 규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채택하도록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및 제4조에서 각 상대국이 UN ECE에 상응하여 도입한 기술규정을 협정 부록에 목록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관련 자동차 및 부품은 상호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협정 발효 5년 내에 UN ECE 규정 또는 세계기술규정(Global Technical Regulation: GTR)의 관련 기술규정에 조화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EU 협정은 국제표준에 상응하는 기존의 기술규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인정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해당 국제표준과의 조화 의무화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지 않는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하도록 한 것이다.

한-EU 협정 자동차 분야 TBT 규범 중에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최혜국 대우 의무와 관련이 있다. 한국과 EU는 부속서 제5조를 통해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내국세와 배출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제3국이 원산지인 동종 제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양 당사국 원산지 제품에 부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협정상 보장되는 개방 수준 이외에도 제3국에 부여되는 특혜까지 양국에 확대 적용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양국은 그러한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체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제6조). 다만,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한 목적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시장접근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규정하며,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제7조). 요컨대 자동차 분야에 있어 신규 조치에 의한 시장접근 제한이 최소한으로 허용되며, 과학적,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타

한국 FTA TBT 제도상 전기전자 제품, 통신기기 및 자동차 분야 외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화학물질 분야, 목재 및 건축제품 분야에 관한 분야별 접근 조항이 있다. 이들 조항들은 대체로 관련 분야의 특성과 관련이 높은 원칙과 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접근에 대하여, 한-EU 협정은 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몇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적인 예로써,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에 대한 높은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요건이더라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을 시장접근 허용을 위해 침해받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부속서 2-라).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개발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규제조화회의(International Committee on Harmonization: ICH) 및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기국제정합화기구(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GHTF),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The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and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등 관련 국제기구들을 열거하고 있는 바,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

화학물질 분야에 관한 규범과 관련해서는, 한-EU FTA가 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장려하고 동물 실험을 축소하고, 적절한 화학물질 규제 메커니즘을 이행하고 비밀정보를 보호하며, 국제 화학물질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우수 관행을 개발하고 증진한다는 원칙이 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부속서 2-마).

한-캐나다 협정은 제6.5조의 “특정 분야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력” 조항을 통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와 저압 장비 분야 그리고 목재 건축제품 분야에 대한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장비 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방식을 공유하고 사용을 장려하고,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분야, 저압 장비 분야에 대한

중복시험과 인증요건을 축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목재 건축제품 및 관련 자재 분야에 대해 상호 수용을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장려하는 등 분야별 다른 수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신규 조항: 국경조치, 시장감시 및 표시·라벨링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는 제품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 유통 또는 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공급자를 처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자국의 기술규정을 위반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제품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장감독 체계를 운영하여 제품 안전과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소비자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제품에 대한 이와 같은 집행체계는 통관절차에서부터 시작되며, 수입 제품이 해당 품질규격과 안전요건을 모두 준수했다는 확인을 받고 수입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수입시장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수입국의 규제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산 제품에 비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유통 정보 확보와 통제 그리고 유사시 생산자 및 공급자 추적과 처벌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엄격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통상 관점에서 본다면, 수입국이 규제 필요성을 근거로 국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WTO TBT 협정과 여러 FTA들은 국가의 규제권한 인정과 이를 남용한 불필요한 무역제한 방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 한국 FTA는 기본적으로 당사국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기술규정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일부 협정은 국경조치와 시장감시에 있어 양국이 협력의무에 관한 명시적 조항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FTA로는 한-싱가포르 협정, 한-콜롬비아 협정 및 한-중 협정의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조항이 있으며 한-터키 및 한-EU 협정도 시장감시 조항이 있다. 동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양국 간의 정보

교환과 요청 시 정보를 제공 한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관련 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선언적인 문구로 되어 있고, 양국의 견해를 교환하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조항을 도입하여 TBT 관련 규범의 범위를 시장감시 및 국경조치까지 확대하고 이에 관한 양국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WTO TBT 협정이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에 관한 협력 의무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FTA 조항들은 TBT 대응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규율 분야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면, 한-EU 협정과 한-터키 협정은 양 당사국이 “시장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하며 시장 감시와 관련된 제반의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는 역내 통합과정을 겪으면서 엄격한 사후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하였는바, 가령 상기 조항을 근거로 양자 간에는 특별히, 그리고 보다 긴밀하게 시장 진입과 유통, 판매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기술장벽에 관해 의사를 교환하고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가의 제3국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에 관하여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최혜국 대우원칙의 적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체결된 한-중 협정과 한-콜롬비아 협정도 국경조치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들 FTA가 개도국 간의 협정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되는 바이다. 한-콜롬비아 협정은 자국의 국경 통제 및 시장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한다는 일반적인 정보교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당국이 인정, 지정 또는 위임한 기관을 이용하여 국경 통제 및 시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활동에 있어 당국 및 적합성평가 기관의 역할을 보장하고 있다.

한-중 협정은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수입국의 역류조치에 대해 이해당사자(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통관 역류로 인한 무역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한쪽 당사국이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어 적합성평가 시험샘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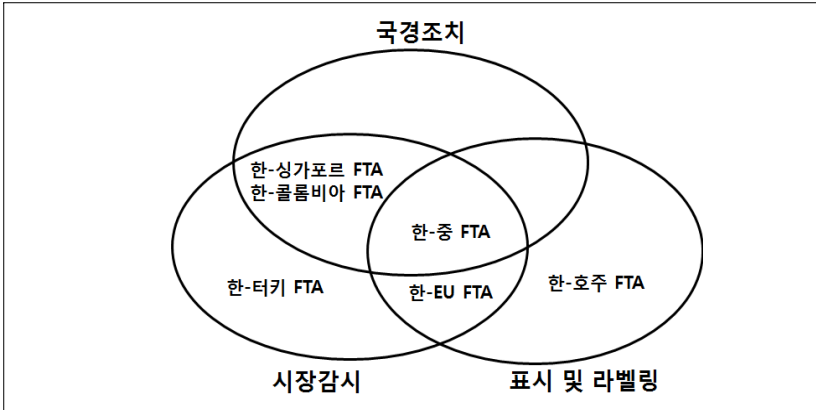
상품을 입국항에서 역류하는 경우, 역류 사유를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국경조치 관련 협력 의무는 양국 간의 무역 특성을 고려할 때 유용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중 협정은 추가적으로 “소비자 제품 안전”에 관한 조항을 두고 소비자 제품의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각종 시장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정보교환과 규제협력을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 당사국이 “관련 규제 체계, 사고 분석, 유해 정보, 제품 금지, 제품 리콜 그리고 시장감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제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범규제관행, 제품안전감시를 포함한 위험 관리 원칙 개발 및 이행 그리고 규제집행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있어 긴밀한 규제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체결로 무역이 더욱 확대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국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시 시장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동 조항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시 및 라벨링 조항은, WTO TBT 협정 부속서 정의상 매우 간단하게만 언급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범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교적 최근 체결된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는 표시 및 라벨링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규범을 도입하고 있으며 Molina and Khotoshavina(2012)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총 9개(4%)의 협정만이 동 조항을 두고 있으며 모두 2009년 이후 체결되었고 대체로 EU와 아시아국가 간의 협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FTA 중에서는 한-EU, 한-호주, 한-중 협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 협정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또는 사용자 관련 표시 및 라벨링 제도의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요건을 도입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첫째, FTA 당사국은 표시 및 라벨 규제의 형식을



출처: 저자 정리.

그림 1. FTA상 도입된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 조항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범은 한-호주 협정에는 없으며, 한-EU 모델이 한-중 FTA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세 협정 모두, FTA 당사국은 표시 및 라벨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수용하는 경우 국제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정보일 경우이거나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는 한, 다른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세 협정 모두, WTO TBT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표시 및 라벨 대신 동반서류에 표시·라벨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일부 한국 FTA는 기존 FTA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없는 신규 조항을 만들어 TBT 대응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싱가포르 FTA와 한-EU FTA에서 새롭게 도입한 국경조치 및 시장감시를 비롯하여, 한-호주 FTA 그리고 한-EU FTA에서 도입한 표시·라벨링 조항을 통합한 모델이 한-중 FTA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은 기체결 FTA를 통하여 진보시킨 일부 규범과 절차를 향후 다른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시킬 수 있

을 것이며, 그 결과 전반적인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1) FTA의 TBT 분쟁해결제도

전 세계의 FTA들은 일반적인 통상분쟁에 대하여 FTA 내에 협의제도 및 중재패널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FTA제도와 WTO 분쟁해결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Molina and Khotoshavina, 2012).

한국 FTA의 분쟁해결제도도 이와 유사하다. 한국의 기체결 FTA들은 모두 해당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WTO 제도와는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양 당사국의 합의 하에 FTA와 WTO 두 분쟁해결 포럼 중에서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FTA 규범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WTO 절차를 통해 해결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FTA 규범의 적용과 이행이 결국 WTO 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두 제도가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FTA 중 대부분은 패널중재 절차 이외에도 모든 분쟁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양 당사국의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비사법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비사법 절차는 FTA의 정규 분쟁해결 절차 이전에, 그리고 정규 절차 중에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채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사법 절차와는 달리, 분쟁해결을 위하여 규범에 근거한 합치성 여부를 논하지 않고, 양국이 상호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도록 도모하며 비공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TBT 분쟁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TBT 분쟁이란 결국 일국의 정당한 공공규제가 장벽을 구성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기란 어렵고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TBT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한국의 FTA들은 모든 분쟁해결에 활용될 수 있

는 FTA 중재패널 절차 또는 WTO 절차 또는/그리고 비(非)소송 분쟁해결 제도를 제시하는 한편, TBT 문제와 TBT 분쟁해결을 위한 기술장벽위원회 및 조정메커니즘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대다수의 FTA들은 기술장벽위원회 또는 조정메커니즘을 구성하여 TBT에 관한 제반의 문제해결, 협의촉진 및 규제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점검하고, 한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술규제 개발과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TBT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제반의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FTA의 TBT 규범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TBT 분쟁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한국 FTA들은 저마다 상이한 절차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쪽 당사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가 협정들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위원회에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정상 도입한 FTA 중재패널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FTA 중재패널 절차를 따르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협의 및 TBT 문제 해결을 위하여 FTA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모호하며 어떠한 언급도 없는 협정들이다. 한국 FTA의 분쟁해결제도를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우선, 첫 번째 경우 즉, TBT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FTA의 분쟁해결제도를 따르도록 명문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협정이 대표적이다. 동 협정은 TBT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최종수단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FTA 중재패널의 심의를 바탕으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페루 협정, 한-미 협정, 한-콜롬비아 협정 및 한-베트남 협정은 TBT 위원회가 TBT 규범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해

〈표 1〉 한국 FTA에 도입된 분쟁해결제도

	FTA 분쟁해결제도상 “주선, 조정 및 중개” 메커니즘 포함 여부	
	포함	불포함
명시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따른다”고 규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가포르 협정 • 한-콜롬비아 협정 • 한-베트남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페루 협정 • 한-미국 협정
명시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도 협정 • 한-중국 협정 • 한-EU 협정(중개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호주 협정
불분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칠레 협정 • 한-EFTA협정 • 한-ASEAN 협정 • 한-캐나다 협정 • 한-뉴질랜드 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터키 협정

출처: 저자 정리.

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협정상의 협의 절차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정상의 협의절차란, WTO 분쟁해결제도와 마찬가지로, 패널절차의 전 단계로 작용하며, 통상적으로 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소 당사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패널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므로, 결국 FTA의 정규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절차로서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를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페루 FTA와 한-미 FTA는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이러한 비사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 흥미롭게도 두 번째 유형 즉, TBT 분쟁에 대해서는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정들이 있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우선 한-인도 협정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TBT 또는 SPS 사안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를 수 있게 되겠지만, 조항의 의미상 회부하지 않는 것이 원

칙이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건부적으로 회부된다고 해석되며, 이에 따라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분명한 조항을 두고 있는 예로써, 한-호주 협정과 한-중 협정이 있다. 두 협정은 각각 제5조와 제6조에서 매우 분명하게,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며 TBT 분쟁을 FTA 중재패널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TA TBT 제도에 관한 문제는 해당 FTA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WTO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협정이 TBT 분쟁을 FTA 중재패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FTA 협정상 의 비사법 절차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중 협정은 분쟁해결제도상 비사법 절차로서 주선, 조정 및 중개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협정상 의 분쟁해결 제도를 배제한다는 의미가, 이러한 비사법적 메커니즘을 포함한 분쟁해결절차 전체를 배제하는 것인가가 모호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호주 협정의 경우 FTA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에서 비사법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분쟁해결절차를 배제한다는 의미에 비사법 절차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동 절차가 유효한 수단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패널심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나, TBT위원회가 주선, 조정, 중개 메커니즘과 같은 비사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협정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유형의 FTA 제도는, 위원회 또는 조정메커니즘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상 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경우이다. 이 같이 법적 근거가 부재한 협정들로는 한-캐나다 협정과 한-뉴질랜드 협정이 있다. 또한, 한-EFTA 협정과 한-ASEAN 협정의 경우는 당사국 간의 협의 및 전문가 협의 제도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또는 조정메커니즘의 역할과 비사법 절차의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다.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BT 분쟁에 대해 FTA 분쟁해결 제도를 배제하려는 근본 취지는, 위원회 및 비사법 절차에 따라 당사국의 상호 합의 하에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심의를 통해 일국의 정당한 기술규제의 FTA 규범 위법성을 판정하 기란 실질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대부분의 FTA 규범이 WTO 규범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에서, 비사법적 메커니즘을 보다 유용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절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협정의 경우, 그리고 어떤 절차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지 모호한 협정의 경우, 비사법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해결을 우선적으로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EU FTA의 중개메커니즘

한-EU 협정은 비관세조치 관련 분쟁을 중개메커니즘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한국 FTA 중에서 유일하게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한-EU 협정 부속서 14-가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한-EU 협정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은 비(非)농산물 시장접근, 무역구제, TBT 및 SPS 조치, 무역원활화,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 및 동 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의 분야별 부속서상의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모든 비관세 사안에 적용된다(동 부속서 제2조). 중개 메커니즘은 당사국이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하고 그 조치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그 조치가 어떻게 그러한 효과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서면과 함께 요청하면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다(동 부속서 제3조). 절차가 개시되면 일정한 기한 내에 중개인이 선정되어 절차가 진행된다.

중개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중개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양 당사자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인지,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중개 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개인의 사법적 판단이 제한

된다는 점이다. 즉, 중개인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양 당사자가 고려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조치가 동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아니 되고, 그 조치의 정책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의문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동 부속서 제5조). 이러한 중개의 규칙은 일반적인 WTO 또는 FTA 분쟁해결절차와 다른 부분이며, 중개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법적 판단에 따른 해결이 아니라 상호 합의 도출이기 때문이다.

중개 절차는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중개에 의한 해결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중개 절차 종료는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중개인의 중개노력 중단에 관한 서면 선언에 의해, 또는 한쪽 당사국의 서면 선언에 의해 완료 및 종료되며 중개 내용은 비밀이 유지된다(동 부속서 제5조). 중개 절차의 종료 사유로, 상호합의 도출과 같이 긍정적인 결과 사유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중개인이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면으로” 선언하는 경우나 또는 “중개 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를 선언하는 상황과 같이 중개가 실패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포함되고 있어, 중개절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양 당사국은 중개절차를 통해 합의된 해결책을 과도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며, 중개메커니즘으로 동 협정 제14장의 분쟁해결상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메커니즘을 이용했다고 하여, 정규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동 부속서 제6조 및 제7조). 또한 중개메커니즘상의 절차가 동 협정 또는 다른 협정(가령, WTO 분쟁해결절차)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개 메커니즘을 통해 얻은 정보와 상황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오·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동 메커니즘은 구체적으로,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당사국이 취한 입장, 해결책을 다른 당사국이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 또는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을 다른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부속서 제7조).

이처럼 TBT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는 WTO 및 FTA의 패널심의 절

차 이외에도 다양한 비사법적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자의 활용이 더욱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FTA TBT 규범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TBT위원회를 통한 의견 교환과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적 해결을 모색하고, FTA에 제시되고 있는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를 활용하여 상호 합의할 만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최종적으로 WTO 또는 FTA의 패널심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FTA마다 상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두고 있으며 협정마다 이용가능한 비사법절차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한-EU FTA가 제시하고 있는 중개 메커니즘이나 한-인도 협정과 한-중국 협정이 원칙적으로 사법적 해결제도를 배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방안 도출일 것이므로 실제 제도 운용에 있어서는 이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TPP상 주요 TBT 규범과의 비교 분석

2015년 10월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정 타결로, 국제통상질서의 재편과 통상규범 발전 동력의 재가동 가능성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TPP는 태평양 연안 APEC 가입 12개국을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지역통상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른바 메가-FTA이며, 수년 간 난항을 겪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향후 1, 2년 동안 TPP가 비준절차를 거치며 발효를 준비하는 기간 혹은 빠른 시일 내에 가입을 최종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TPP 합의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TPP에 합의된 TBT 규범은 협정 제8장의 12개 조항과 7개의 분야별 부속서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¹ 동 협정은 여느 WTO 및 FTA TBT 규범과 마

1. TPP협정 제8장 무역기술장벽의 12개 기본조항과 7개의 분야별 부속서는 다음과 같

찬가지로, 불필요한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제협력과 모범규제 관행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중앙정부기관과 중앙정부기관의 직속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되며, 상품무역에 영향을 주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적용된다. 동협정은 국제표준, 가이드 및 권고의 역할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내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적합성평가 기관의 지정, 등록에 대해 비차별 대우를 보장하며, 다른 회원국 소재 지정된 평가기관이 자국의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규제조정을 위한 대화, 지원, 협력 및 정보교환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PP의 주요 규범사항들을 검토하여 한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TBT 규범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두 규범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이미 15개의 FTA를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TBT 규범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한-EU, 한-싱가포르 협정 등을 통해 선진적인 TBT 모델을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TPP 협상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과 같은 선진국 회원국들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개도국 회원국들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개방수준을 모색하였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TBT 규범 관련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장벽을 제거하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TPP 협정 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WTO TBT 협정 수준의 규범 이행을 재확인하고, 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표준과의 조화, 적합성평가 수용 권고 및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인가제도 확립을 위한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규범과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회원국들의 WTO 규범 이행을

다.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TBT 협정 일부 조항의 채택, 제5조 국제표준, 가이드 및 권고, 제6조 적합성평가, 제7조 투명성, 제8조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이행기간, 제9조 협력과 무역원활화, 제10조 정보교환 및 기술 논의, 제11조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제12조 부속서, 부속서 8-A 와인 및 증류주, 부속서 8-B 정보통신기술상품, 부속서 8-C 의약품, 부속서 8-D 화장품, 부속서 8-E 의료기기, 부속서 8-F 식품포장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등록상표방식(proprietary formula), 부속서 8-G 유기농 상품.

촉진하고 기술적, 규제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PP 협정의 TBT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는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TBT 규범에 관한 제8장의 조항에서는, 한국의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TBT 이행을 위하여 TBT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협정 운용을 모니터링하고, 의견 교환,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 이행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분쟁사안에 대하여 분쟁해결 제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WTO TBT 규범상의 분쟁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어, TBT 분쟁이 WTO 사안인지 FTA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느 한국 FTA들과 유사하게, 협의절차와 중재패널 절차를 두고 있는 한편, 언제나 자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함께 두고 있어 비사법 절차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 FTA의 TBT 분쟁해결 제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비관세장벽 또는 TBT 분쟁에 대한 비사법 절차 우선적용 내지는 사법절차 비적용 제도는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TPP 협정상 도입된 TBT 규범 관련 분야별 부속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의 기체결 FTA에 도입된 분야별 접근은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 분야, 자동차 분야,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 화학물질 분야에 국한된다. 그러나 TPP 협정 부속서의 분야별 접근 분야는 식음료 제품 분야까지 포함하며, 구체적으로 와인 및 증류주, 식품포장 및 식품첨가물, 유기농 상품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규제협력 및 표준화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와인 및 증류주 라벨과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식품포장 및 첨가물의 국제표준 사용을 합의하는 등, 한국 FTA의 분야별 무역기술장벽을 위한 부속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식음료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과 라벨 관련 합의사항들이 도입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TBT 규범을 검토하고, TPP 가입을 대비한 한국의 입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한국 TBT 대응을 위한 FTA 이행과 전략

WTO 협정이 발효된 이래로, 다자무역 규범의 이행이 강화되고 분쟁해결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법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FTA가 빠르게 확산되고 지역무역 통합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급변하는 통상체제의 주요 특징 중 두 가지는 비관세장벽이 증가하여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FTA, 메가-FTA 등 지역무역체제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통상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통상체제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TBT 규범을 한국 FTA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TBT 통상 규범의 법적 진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WTO의 일반규범이 FTA 체제 내에서 다변화(rule-diversification)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 FTA 제도상의 TBT 규범은 대체로 WTO 규범을 수렴(convergence)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상대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WTO 규범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이 도입되면서 최근까지 주목할 만한 법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FTA 제도가 누적되면서, TBT 규범과 절차도 지속적인 변이와 진화를 거친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EU 등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기술규정의 동등성 인정과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부문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고 분야별 접근을 바탕으로 상품별 TBT 제거 및 시장진입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낸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선진적인 TBT 제도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었고 WTO TBT 협정에는 없던 국경조치, 시장감독 조치 및 라벨제도 관련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면서 최근 FTA TBT 조항들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발달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패널절차와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 제도 외에도 비사법적 절차 이용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WTO

체제에서 TBT 분쟁에 대해 비교적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법적 분쟁 해결 절차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능하면 상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정 메커니즘을 최대한 고려하고 모색한 결과일 것이다.

물론 FTA 체결 이후에도 TBT 규범의 이행수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TBT 제거를 위한 후속조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및 기술규정 동등성 인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자 교섭을 체결하고 기술규제 부문의 기술협력과 규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다자적, 양자적 TBT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국내 인력 제고,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이 그러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또한 FTA 상대국가가 개도국인 경우에는, FTA 규범을 이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전략적인 기술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나, 여전히 동북아 3국 FTA 및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같은 지역적 FTA와 메가-FTA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FTA 협상을 통해 꾸준히 발전시키고 도입해 온 한국 FTA의 TBT 규범은 최근 타결된 TPP상의 TBT 제도와 비교할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체결 FTA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질적인 TBT 대응 성과를 만드는 것은 FTA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개별국가의 TBT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통합이라는 관점에서 TBT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TBT 제도상의 근본적인 발전 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한-호주 FTA협정문(국문)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FTA협정문(국문)
 산업통상자원부. 한-중국 FTA협정문(국문)
 산업통상자원부. 한-베트남 FTA협정문(국문)
 산업통상자원부. 한-뉴질랜드 FTA협정문(국문)
 산업통상자원부. 한-콜롬비아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싱가포르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EFTA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ASEAN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EU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페루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미국 FTA협정문(국문)
 외교통상부. 한-터키 FTA협정문(국문)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문(영문)
 Kotschwar, Barbara. 2001. "Standard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oward Free Trade in the America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esser, Caroline. 2007. "Do Bilateral and Regional Approaches for Reduc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Converge towards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 TAD/TC/WP(2007)12/FINAL.
 Lee, Ti-Ting. 2012.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SIEL Working Paper. 2012/12.
 Molina, Ana Cristina and Khoroshavina, Vira. 2015. "TBT Provision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To What Extent Do They Go Beyond the WTO TBT Agreement?" WTO Working Paper. ERSD-2015-09.
 WTO. 1994. *The Legal Tex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TO. 2015. Seventh Triennial Review of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under Article 15.4, G/TBT/37.
 WTO. 2015. Twentieth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G/TBT/36.

Analysis of TBT Provisions and their Relevant Legal Issues in Korea's FTA Agreements

Minjung Kim

Research Fellow,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joon James Park

Researcher,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e &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prolifera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abus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its related trade disputes particularly and rapidly have also been increas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such area are also modified and developed by bilateral or plur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FTA) in these days. In general, the TBT chapters in FTAs reaffirm and enhance the WTO standards, however, the FTAs agreed by Korea additionally demonstrate some developed models of TBT regulations – in particular, sector-based approach, further extension by the committee, measures at the border, market surveillance, marking and labeling.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s in the FTAs usually permits the forum shopping, while in the Korea-EU FTA solely adopts co-ordination mechanism. The recently-reach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though Korea is not a participating nation at the moment, also has adopted almost identical level of the TBT standards in comparison with other FTAs of Korea, but with the exceptions in more and wider sectoral coverages, which Korea must consider when joining the TPP membership in the future.

Keywords: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Korea-EU FTA, FTA dispute settlemen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sector-based approach

김민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_mjk@snu.ac.kr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E-mail_jjjpark@snu.ac.kr

